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41
----------	-------

발의연월일 : 2022. 9. 21.

발의자 : 김승원 · 강준현 · 김승남

김의겸 · 신정훈 · 양미원영

이원택 · 이인영 · 최강욱

한병도 · 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또는 시·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도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 4. 27. 시행 예정)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을 특례시 사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에서는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조문의 미정비

예 따른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방채 등) ① (생 략)	제19조(지방채 등) ① (현행과 같음)
<p>② <u>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u>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u>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례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p> <p>-----</p> <p>-----</p> <p>-----</p> <p>-----</p> <p>-----</p> <p>-----</p> <p>-----.</p>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p>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u>대도시</u>의 조례로 정한다.</p>	<p>④ -----</p> <p>-----</p> <p>-----</p> <p>-----</p> <p>-----</p> <p>-----</p> <p>-----</p> <p>-----<u>특례시</u>-----.</p>